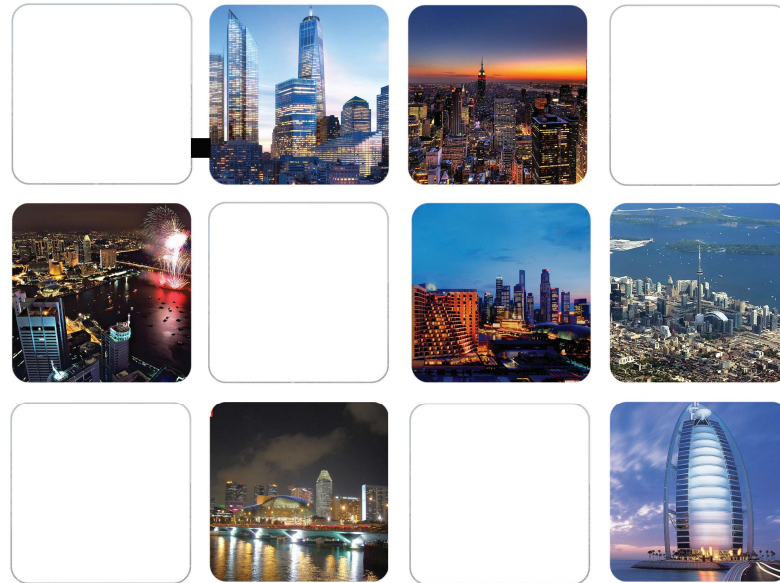


지성세무회계사무소
공인회계사 /세무사김선희

홈페이지: www.jsstar.co.kr
전화 : 044-867-8430, 868-8430
팩스 : 044-868-8433

사업자의 장부작성(기장대리) 및 세무신고 서비스



지성세무회계사무소

Table of contents

- ▶ I. 부가가치세 신고
- ▶ II. 종합소득세 신고
- ▶ Ⅲ. 회계장부의 작성
- ▶ IV. 기타 세무지식
- ▶ V. 업무의뢰시 준비사항



1. 부가가치세 신고

다 함께 한발 앞서가기 위하여!

지성세무회계사무소의 시선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. 사업자가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(current tax risk)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무상 위험(potential tax risk)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(sustained growth)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
서비스의 내용

1. 부가가치세 신고

2. 종합소득세 신고

3. 회계장부의 작성

4. 기타 세무지식

▶ 부가가치세 신고

사업자	과세기간	확정 신고대상	확정 신고납부기간
일반과세자	제1기 1.1 ~ 6. 30	6개월간 사업실적	7.1 ~ 7.25
	제2기 7.1 ~ 12.31	6개월간 사업실적	1.1 ~ 1.25(next year)
간이과세자	1.1 ~ 12.31	1년간의 사업실적	1.1 ~ 1.25(next year)

- ▶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½을 예정고지합니다.
- ▶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를 모두 해야 합니다.
- ▶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이 결정 고지되며, 신고불성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.

▶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의도치 않은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.

2. 종합소득세

다 함께 한발 앞서가기 위하여!

지성세무회계사무소의 시선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. 사업자가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(current tax risk)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무상 위험(potential tax risk)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(sustained growth)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
서비스의 내용

1. 부가가치세 신고

2. 종합소득세 신고

3. 회계장부의 작성

4. 기타 세무지식

▶ 종합소득세 신고

- ▶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(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는 6월 30일)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▶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,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.
- ▶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.

▶ 종합소득세의 합법적인 절세 및 의도치 않은 세무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.

3. 장부의 비치 및 기장

다 함께 한발 앞서가기 위하여!

지성세무회계사무소의 시선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. 사업자가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(current tax risk)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무상 위험(potential tax risk)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(sustained growth)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
서비스의 내용

1. 부가가치세 신고

2. 종합소득세 신고

3. 회계장부의 작성

4. 기타 세무지식

▶ 장부의 비치 및 기장-계속

▶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(20%)가 적용되며, 사업상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(장부 기장시 10년간 공제) 각 종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각 종 세제가 장부를 근거로 부과되는 것이므로, 세법과 관련 회계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장부를 유지하는 것이 지속적인 사업성장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성세무회계사무소는 지속적인 연구와 축적된 노하우로 기장대리 및 세무신고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준높은(high quality)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4. 기타 세무지식(1/2)

다 함께 한발 앞서가기 위하여!

지성세무회계사무소의 시선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. 사업자가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(current tax risk)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무상 위험(potential tax risk)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(sustained growth)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
서비스의 내용

1. 부가가치세 신고

2. 종합소득세 신고

3. 회계장부의 작성

4. 기타 세무지식

▶ 적격증빙의 수취

- ▶ 세금계산서
- ▶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
- ▶ 신용카드매출전표(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에 연동된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매출전표를 수취)
- ▶ 현금영수증
- ▶ 지로영수증
- ▶ 세금계산서에 준하는 청구서(통신요금 등)
- ▶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,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금액의 2%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4. 기타 세무지식(2/2)

다 함께 한발 앞서가기 위하여!

지성세무회계사무소의 시선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. 사업자가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(current tax risk)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무상 위험(potential tax risk)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(sustained growth)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
서비스의 내용

1. 부가가치세 신고

2. 종합소득세 신고

3. 회계장부의 작성

4. 기타 세무지식

▶ 원천징수

- ▶ 원천징수제도는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(급여, 사업·기타소득 등)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
- ▶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및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(직전년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1월 10일·7월 10일 신고납부 가능).

▶ 지급명세서 제출

- ▶ 지급명세서란 소득자(종업원 등)의 인적사항, 지급액,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 근로자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,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(4분기에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)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.
 - ▶ 근로·사업(봉사료 포함)·퇴직소득 : 다음연도 3월 10일
 - ▶ 기타 연금·이자·배당소득 : 다음연도 2월말일
- ▶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%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.

5. 업무 의뢰시 필요한 자료

다 함께 한발 앞서가기 위하여!

▶ 기본자료

- ▶ 사업자등록증
- ▶ 상가 등 임대차계약서
- ▶ 대표자 신분증
- ▶ 대표자 인적사항 : 휴대폰번호, 사업장전화번호

▶ 정기적으로 보내주셔야 되는 자료

- ▶ 종이 세금계산서(전자세금계산서는 세무대리인이 직접 조회 가능)
- ▶ 신용카드 등 매출집계내역(나이스정보통신 등 van사에서 기간별 자료 수령 가능)
- ▶ 네이버쇼핑 등 오픈마켓 매출집계내역
- ▶ 신용카드 등 지출(매입)내역 - 엑셀파일 가능
- ▶ 경비지출 관련 영수증 등

▶ 주의 사항

- ▶ 모든 증빙서류는 보관
- ▶ 물품 등 매입시: 3만원 초과시 신용카드 결재(또는 세금계산서 수령)
- ▶ 가능하면 비용 지출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(사업용계좌에 연동된)

www.jsstar.co.kr



지성세무회계사무소

**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92 해피라움2 4층 406호
044-867-8430, 868-8430**

지성세무회계사무소는 축적된 전문지식과 오랜 실무경험
을 통하여 고객의 재무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.